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0171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2. 1. 1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300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9. 접수 제330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A”은 모두 “A”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A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과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양주시 M아파트 N호가 있었는데, 가치가 훨씬 낮은 이 사건 건물만 증여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게 된 이유는 남편인 A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서 정식의 보습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이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훈, 판사 홍승구, 판사 홍지영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은평구 S 지상 T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04.16㎡(56.58㎡ 다세대주택 1세대, 47.58㎡ 근린생활시설)

2층 134.38㎡(다세대주택 1세대)

3층 134.38㎡(다세대주택 1세대)

4층 115.52㎡(다세대주택 1세대)

[도로명주소]

서울 은평구 H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U호 철근콘크리트조 44.84㎡

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 서울 은평구 S 대 239㎡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9분의 25.65. 끝.

